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4월 1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4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정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 규제개혁추진단(TF팀)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구본청 부구청장 소속의 「규제개혁추진단」을 한시기구로 설치
(안 제3조의2 제1항)
- 신설되는 「규제개혁추진단」 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30일까지로 함
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. 3.10 ~ 3.12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발언과 안전 행정부의 '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(2014.

3.19) 에 의거 시·군·구 부단체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(T/F)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

- 현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규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(90%수준)로써, 중앙정부에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, 시민생활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임에도 자치법규 미비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실태이므로
-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 운영하라는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(T/F)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, 그 존속기간을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하여
-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,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,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,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기준),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(2014. 3.10~12), 안전행정부의 '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(2014. 3.19)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긴급히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